

제 1 장

조세지원제도

1-1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 3

1-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6

1-3 조세특례제한법 • 1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 1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의 납세의무

법인 및 내국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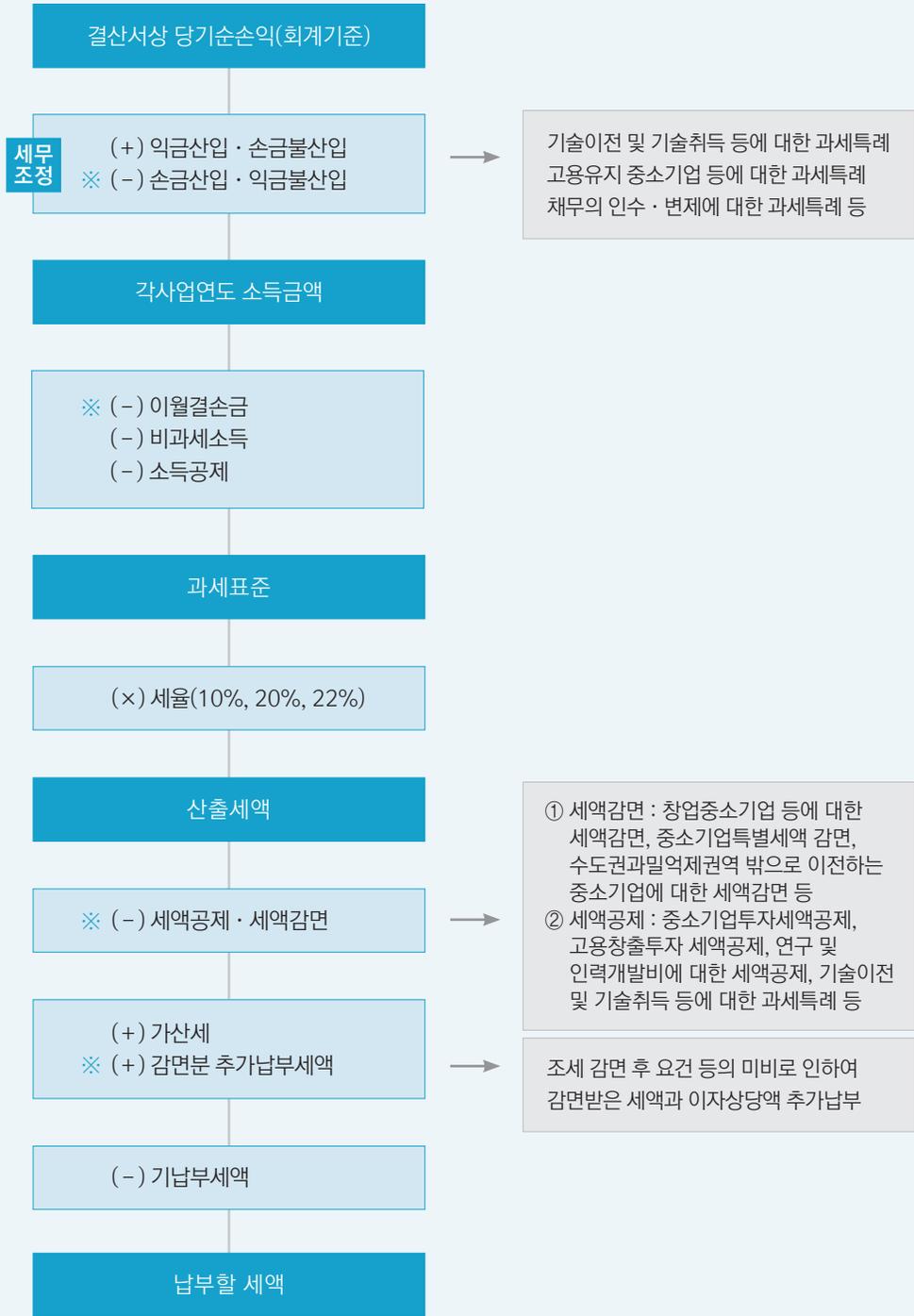
내국법인 및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개념 및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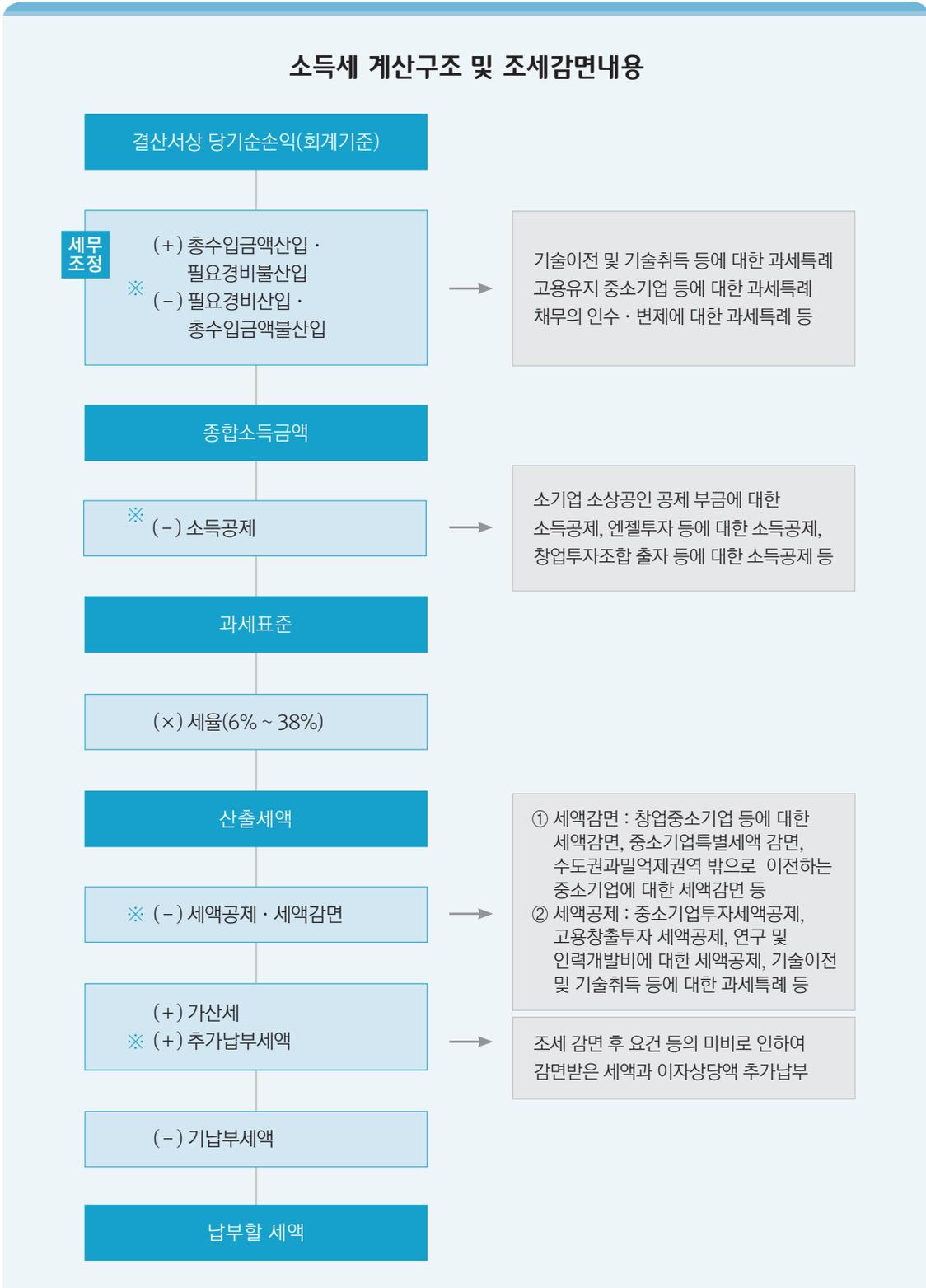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내국법인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

용 어	정 의
내 국 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과 세 표 준 신 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손 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

1-2

고용 · 투자 ·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및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청년창업은 3년간 75% +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투자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2	창투자,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 ② 창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을 통해 ①의 기업에 대한 출자
창투자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3-3	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등에 신규설립 출자 또는 설립 후 7년이내에 증자하여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단, 출자 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되면 세액 공제액 환수
창투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과세특례 ☞ 3-5	다음의 배당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① 창투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④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구 분	지 원 내 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3-6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 배제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3-7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3-8	벤처기업의 임직원(기숙자 등 조건만족)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 벤처기업은 행사비용에 대한 경비는 손금 불인정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3-9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가능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3-1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1천5백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를 2년 이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 3-11	창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 사전상속 ☞ 3-12	60세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시 정산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3-13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3-14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소유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전략적제휴 계획에 따라 제휴법인의 주식과 교환 또는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제휴법인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16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일정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납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4-1	중소기업으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감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D9D9;">소 기업</th> <th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D9D9;">중 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3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 </td> </tr> </tbody> </table> <p>※ 도매업 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p>	소 기업	중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30%
소 기업	중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 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4-2	<p>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다음의 한도내에서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4-3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를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4-4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4-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원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 ☞ 4-6	2,400만원(월할계산)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4-7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4-8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4-9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감면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5-1	사업용 자산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중고품 제외)의 3%(4%)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5-2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 ①+②금액 세액공제 ①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 × 3%(중소기업 외 0 ~ 2%) ②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 × 4 ~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3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등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금액(중고 및 리스 제외)의 7%(일반기업3%)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5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등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 투자금액의 7%(10%)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 복귀시 5년(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법인세 등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시 관세 100%(50%) 감면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7	청정생산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10%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8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제외)의 7% (3%,5%) 세액공제(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시 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5-9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금액(중고품 제외)의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단, 투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연구개발비 차지비율이 5%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10	영상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소재로 제작한 것 또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의 제작 비용 중 법에 정해진 비용에 관하여 10%(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5-11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선택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소득세)법 준용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6-1	①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30%(중견기업 20% + α/한도 30%) ② ①을 제외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 ㉡중 선택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발생액 초과금액×50%(중견기업 40%)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용×25%(중견기업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6-2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중고품 및 리스 제외)의 6%(중견기업 3%, 기타 1%)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세액감면(중견기업 50%) 특허권 등의 취득금액 10%(중견기업 5%, 한도10%) 세액공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 세액 감면 (중견: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6-6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6-7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6-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세액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6-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 재산세 50%경감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후 법인에 사업용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세액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및 법인의 취득세 면제 •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7-3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7-4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8-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8-2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전 후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8-3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8-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8-5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구 분	지 원 내 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6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및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적용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8-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주사무소)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8-9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1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12.1.1~'18.12.31)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 세액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공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50%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9-3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 청년(경력 단절여성) 상시근로자 100%, 청년(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50%(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구 분	지 원 내 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9-5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당 2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 9-6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7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 9-8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가분의 10%(중견:10%),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10%)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 9-9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가업상속 공제 ☞ 10-1	10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로 재직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500억원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 10-2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허용 ①가업상속재산 50%이상 : 3년거치 12년 분납 ②가업상속재산 50%미만 : 2년거치 5년 분납
가업의 승계에 (중소기업주식사전상속)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10-3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조세특례 제한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 • 중소기업 최저한세 세율은 7%(일반기업은 8~17%)
중복지원의 배제 ☞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자산별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일정한 중복적용 배제 • 동일 과세연도에 일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단, 1989.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및 내국인

1-3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에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 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 및 내국인

1-4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란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www.smba.go.kr

제 2 장

중소기업의 범위

2-1 중소기업의 범위 • 2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2-1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1)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④ 1차 금속 제조업	C24	
⑤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⑥ 가구 제조업	C32	
⑦ 농업·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⑧ 광업	B	
⑨ 식료품 제조업	C10	
⑩ 담배 제조업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르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800억원 이하
⑱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㉑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㉒ 건설업	F	
㉓ 도매 및 소매업	G	
㉔ 음료 제조업	C11	
㉕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㉖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㉗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㉘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㉙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㉚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㉛ 운수업	H	
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㉓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㉖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㉗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㉙ 금융 및 보험업	K	
㉚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㉛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¹⁾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²⁾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³⁾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범위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3) 주된 사업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 기준)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업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

1)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2)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2항을 준용

3)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함

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은 【별표2】를 참조



중소기업 적용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거나, ② 중소기업 기준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거나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별표2】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 중소기업이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②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세법상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별표1】 ③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평균매출액 등	
① 식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② 음료 제조업	C11		
③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⑦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⑨ 1차 금속 제조업	C24		
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⑪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⑫ 전기장비 제조업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⑮ 가구 제조업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80억원 이하	
⑰ 농업, 임업 및 어업	A		
⑱ 광업	B		
⑲ 담배 제조업	C12		
⑳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㉒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㉓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㉕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㉖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㉗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㉘ 건설업	F		50억원 이하
㉙ 운수업	H		
㉚ 금융 및 보험업	K		
㉛ 도매 및 소매업	G		
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㉝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0억원 이하	
㉞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㉟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㊲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㊳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㊴ 교육 서비스업	P		
㊵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㊶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중견기업의 범위

세법상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요건	구체적 내용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주된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㉞「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㉟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⁵⁾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 ⁶⁾ 이 해당 기업의 주식 ⁷⁾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 ⁸⁾ 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 ⁹⁾ 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매출액기준	3년 평균 매출액	세제 지원 내용	법령
	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
	3,000억원 미만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10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영 제23조
		중소중견기업감가상각특례	영 제25조의2
5,000억원 미만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	영 제104조의21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영 제9조	

【참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㉞「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㉟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총액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5)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

6) 외국법인을 포함

7)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8)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

9)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



질문과 답변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¹⁰⁾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 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세무사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 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¹¹⁾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세무사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임업은 비록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열거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12.31.이전에는 농업 중 작물재배 업만이,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농업 및 임업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¹²⁾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11) 헌법재판소 2006.12.28.선고 2005헌바59결정 다수의견

12) 법률 제14390호, 2016.12.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848호, 2017.2.7. 시행령 부칙 제3조

제 3 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9
-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6
-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38
- 3-4 창투사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39
- 3-5 배당소득 과세특례 • 41
- 3-6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43
- 3-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 45
- 3-8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46
- 3-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48
- 3-10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50
- 3-11 증권거래세 면제 • 52
- 3-1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3
- 3-13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56
- 3-1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9
- 3-15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60
- 3-1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3-1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적용 배제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22조 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text{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frac{\text{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text{창업 당시 (토지+감가상각자산)의 가액}} \leq 30\%$$

단, 인수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에 해당

- ②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재기중소기업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창업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 (요건)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 분	내 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지분율 10% 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이상 투자	벤처 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보증·대출(결정된 보증대출 가능금액 포함)금액 8,000만원 이상 및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대출 비율이 5%이상일 것 (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보증·대출 금액 4,000만원 이상은 총자산 비율 요건적용 제외)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경영주 기술능력, 사업성)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 (신청)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해당 업종

업 종	세부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 광업		광업	B	1,000억원 이하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1,000억원 이하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②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000억원 이하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②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③ 건설업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④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⑤ 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⑥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⑦ 방송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⑧ 전기통신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⑨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⑩ 정보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⑪ 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⑫ 광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⑭ 전문디자인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⑮ 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⑯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⑱ 물류산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0억원 이하
⑲ 직업기술 분야교습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⑳ 관광사업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㉑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㉒ 전시산업			N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종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㉓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㉕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㉖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㉗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㉘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 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법령

-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29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2

적용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5.1.1
 - ② 2017년 과세표준 : 1,000,000,000
 - ③ 2017년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800,000,000 \times 20\% = 180,000,000$
-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 ① 2017년 산출세액 : 180,000,000
 - ② 2017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80,000,000 \times 50\% = 90,000,000$
 - ③ 2017년 납부할 세액 : $180,000,000 - 90,000,000 = 90,000,000$

질문과 답변

질문 1) 개인사업자였을 때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 시에도 창업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¹³⁾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2)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에는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¹⁴⁾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서면2탐-2313, 2004.11.12,

14) 법인-2498, 2008.09.17.

질문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¹⁵⁾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14년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¹⁶⁾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따라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16) 국세청상담사례 2016.05.19